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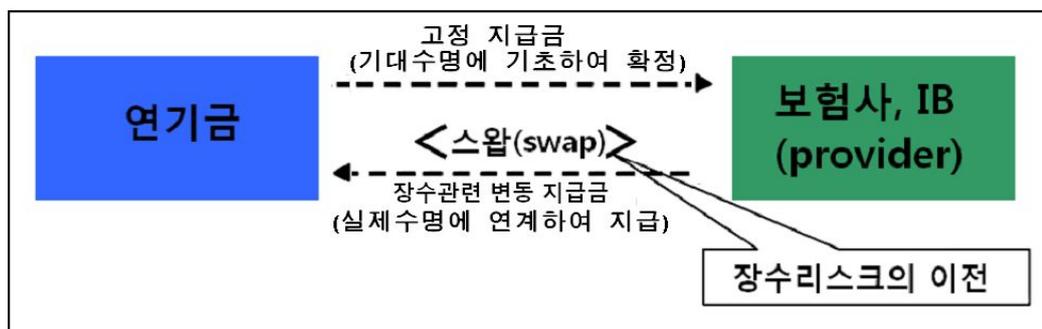
## 【 금융보험 해설 】

###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방법(II) : 장수스왑

이상우 선임연구원

- 장수스왑(longevity swap)은 기대수명에 기초한 지급금과 실제수명에 따른 지급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함.
  - 즉, 장수스왑은 두 거래 당사자간에 변동금리(floating rate)와 고정금리(fixed rate)의 지급 조건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바꾸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함.
    - 연기금은 장수스왑 제공자인 보험회사에게 기대수명에 기초한 고정금리를 지불하고 반대로 보험회사는 연기금에게 실제수명에 따른 변동금리를 지불함으로써 실제수명에 연계된 연금지급을 보장하게 됨.
  - 장수스왑은 확정급여형연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리스크 가운데 장수리스크만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다른 리스크관리 기법보다 낮은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음.
    - 자금의 여유가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확정급여형연금의 장수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수단

<그림 1> 장수스왑 거래 구조



- 장수스왑의 유형은 특화형(bespoke-based)과 일반형(index-based)으로 구분되며 특화형은 특정기업이 보유한 장수리스크에 특화된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일반형은 일반적인 국민의 장수리스크에 근거해 계약이 이루어짐.

- 특화형은 개별회사에 특화된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장수리스크를 완전히 분산할 수 있는 반면, 가입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임.
- 일반형은 개별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는 없어 장수리스크를 완벽하게 분산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의 연기금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장수스왑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기간은 계약별로 상이한데, 일반형은 10~30년이 되는 사례가 많으며, 50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특화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장수스왑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장래 금융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스왑제공자인 금융회사가 일정한 담보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
- 연기금과 금융회사는 장수스왑 거래에 있어서 연금수급자의 기대여명을 정확히 예측하여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미엄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함.
- 장수스왑계약의 제공회사는 주로 보험회사와 재보험사, 투자은행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Swiss Re, Rothesay Life, Abbey Life, Hannover Re, Pacific Life Re, Partner Re, JP Morgan, Credit Suisse 등의 금융회사가 적극적임.

□ 장수스왑거래는 2009년 5월 Credit Suisse社가 처음으로 영국 대기업에 제공한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었으나, 2010년 2월 이후 계약체결이 1건에 불과함.

- 2009년 Goldman Sachs 자회사 Rothesay Life, Swiss Re, Abbey Life 등의 보험회사가 주로 영국내 기업 및 지방연기금을 대상으로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0년 2월말까지 총 64억 파운드의 계약이 체결됨.
- 장수스왑의 활성화가 부진한 이유는 상품의 복잡성과 장수위험 측정 곤란으로 가격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임.